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5 |
|----------|----|

제출년월일 : 2010. 8. 19.
제출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는 교통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함(안 제2조)
-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위원장의 직무 및 부재 시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구분함(안 제6조)
- 바.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천광역시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정비 기본계획,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제통상국장
2. 도시계획국장
3. 환경녹지국장
4. 도시철도건설본부장

5.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6. 교통 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7.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정책업무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정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

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 |
|------------------|----------------------------------------------------------------------------------------------------------------------------------------------------------------------------------------------------------------------------------------------------------------------------------------------------------------------------------------------------------------------------------------------------------------------------------------------------------------------------------------------------------------------------------------------------------------------------------------------------------------------------------------------------------------------------------------------------------|
| <p>관계법령</p> | <p><input type="checkbox"/>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p> <p>제110조 (지방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p> <p>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input type="checkbox"/>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p> <p>제113조 (지방교통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의 국장이 된다.</p> <p>③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은 교통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 <p>관련법규 정비대상</p> | <p>“해당사항 없음”</p> |
| <p>특이사항</p> | <p>“해당사항 없음”</p> |